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국 적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 「국적법」 시행(’22.10.1.)에 따라 국적이탈허가 특례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마련, 국적이탈 허가취소 신설, 국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국적이탈허가 특례의 구체적 기준·절차 마련(안 제18조의2)

- 법률에서 위임한 국적이탈허가 신청인의 자격기준 중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및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한 세부기준 및 고려사항 등을 규정

나. 국적이탈 허가취소 신설(안 제27조)

- 기존 법률에서 규정된 허가 등의 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국적이탈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취소가 가능하도록 새롭게 마련하고, 허가취소 사유, 허가취소 시 절차, 가족관계등록관서 통보 등의 관련사항 등을 규정

다. 국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6)

- 법률 위임 사항인 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에 대한 세부기준, 정부위원 대상 기관,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및 운영, 위원회 회의개최 절차, 기존 위원회 운영 관련 일부 보완사항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28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의2 본문 중 “법 제12조제3항 각 호외 부분에서”를 “법 제12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4조의2 제1항 각 목에 따른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적의 이탈허가를 신청한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류(국내체류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위 기간 내

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데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은 신청인 및 직계존속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④ 법 제14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한 경우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교육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2.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이 될 수 있는 권리
4.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 권리
5. 기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그 행사가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되는 권리

⑤ 법 제14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공직, 국가안보 등 특정 직업의 수행 또는 업무담당, 학업수행이 불가능한 등 신청인의 생활상 지위에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2.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하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⑥ 법 제14조의2 제2항 제6호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는 신청인의 성장 환경, 학업·직업 등 생활관계, 국적이탈 허가신청 시점·사유 기타 관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⑦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전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허가를 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를 “법 제1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제3항 본문 중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를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제4항 본문 “법 제14조의2제2항에서”를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로, 제6항 본문 중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를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로, 제7항 본문 중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를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본문 중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를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로, 제2항 본문 중 “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에서”를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서”로, 제3항 본문 “법 제14조의3제1항”을 “법 제14조의4제1항”으로, 제4항 본문 중 “법 제18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법 제18조의3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본문 중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을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 제6항 및 제7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적이탈 허가신청에 대해 허가한 경우에는 국적이탈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및 허가일

제27조 제1항 본문 중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으로 하며, 제1호 및 제4호의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으로 각각 한다.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제6항의 본문 중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으로 각각 한다.

제28조, 제28조의2를 각각 삭제하고, 제28조의3를 제28조5로 하고 제2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나. 법 제5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다.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제1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라. 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마.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의4를 제28조의6으로 하고,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정보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병무청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의6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계획을 심의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를 다음과 같이4를 제28조의6으로 하고,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28조의5 제1항을 준용한다.

같은 조의 제4항 및 제5항은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5항 “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고, 제6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제28조의5, 제28조의6를 각각 제28조의7, 제28조의8로 하고, 제28조의7 제4호 “제28조의6제1항”을 제28조의8제1항“으로 한다.

제29조 본문 “법 제22조에 따라”를 법 제26조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제6호 “법 제14조에 따른”을 “법 제14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으로, 같은 조의 제2항제1호 “법 제14조의4 및 이 영 제18조의4에 따른”을 “법 제14조의5 및 이 영 제18조의5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2조 “제18조제3항·제4항·제6항, 제18조의2제6항·제7항(제18조의2제6항·제7항은 제18조의3제4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8조제3항·제4항·제6항(제18조제3항·제4항·제6항은 제18조의2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의3제6항·7항(제18조의3제6항·제7항은 제18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같은 조의 제3항 “법 제14조의4에 따라”을 “법 제14조의5에 따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생략)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제28조에 따른</u>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3. (생략)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별제22조에 따른</u>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u>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u>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한다.	제16조의2(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u>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u>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한다.
<신설>	제18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① <u>법 제14조의2제1항 각 목에 따른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u>

고 있는 사람”이란 법 제14조의 2에 따른 국적의 이탈허가를 신청한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류(국내체류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위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데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은 신청인 및 직계존속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④ 법 제14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한 경우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교육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2.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이 될 수 있는 권리

4.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2에 따른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 권리

5. 기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그 행사가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되는 권리

⑤ 법 제14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공직, 국가안보 등 특정 직

업의 수행 또는 업무담당, 학업수행이 불가능한 등 신청인의 생활상 지위에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2.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하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⑥ 법 제14조의2 제2항 제6호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는 신청인의 성장 환경, 학업·직업 등 생활관계, 국적이탈 허가신청 시점·사유 기타 관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⑦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전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적

제18조의2(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명령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제17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제18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 법 제14조의2제2항에서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이탈 허가를 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3(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

-----.

④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란 ---

-----.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여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 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과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여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과 여 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 할 수 있다.	⑦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 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복수 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 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한다.	제18조의4(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 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복수 국적자가 ----- -----.

② 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살인죄, 강간죄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 -----.
③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청문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장제2절 중 청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 -----.
④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상실결정을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8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 ----- 경우에는 제18조의3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의5(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통보는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관보에 고시할 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관보에 고시할 사항)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7. (생 략)	6. 국적이탈 허가신청에 대해 허가한 경우에는 국적이탈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및 허가일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7.·8. (현행 6.·7.과 같음)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1.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취소하려면 -----

주어야 한다. 단서 (생 략)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취소하면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할 경우 그 사람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할 경우 -----.
제28조(국적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1. ~ 3. (생 략)	
제28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삭 제>
① ~ ④ (생 략)	
<신 설>	제28조의3(국적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법 제22조제2항 단서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특별 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나. 법 제5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다.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 국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제14조의2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신 설>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라. 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마. 제18조의2 제7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의4(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정보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병무청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의3(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 ② (생략)

제28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제28조의5(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6(위원회의 운영 등) ① -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계획을 심의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③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

<신설>

④ 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2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28조의5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의7(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은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8조의8제1항 각 호의 ---

는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생략) 제28조의6(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2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청장 등에게 위임한다. 1. ~ 7. (생략)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략) 1. ~ 5. (생략) 6. 법 제14조에 따른 국적의 이탈에 관한 사무 7. ~ 8. (생략) ② (생략) 1. 법 제14조의4 및 이 영 제18조의4에 따른 복수국적자 통보 및 기록표 작성에 관한 사무	----- 5. (현행과 같음) 제28조의8(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 -----. 1. ~ 7. (현행과 같음)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4조 및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적의 이탈에 관한 사무 7.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법 제14조의5 및 이 영 제18조의5에 따른 복수국적자 통보 및 기록표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3항, 이 영 제2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제4항·제6항, 제18조의2제6항·제7항(제18조의2제6항·제7항은 제1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4조제4항, 제27조제3항·제6항 및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 등에 하는 통보에 관한 사무 ③ 법 제14조의4에 따라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를 하거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자 통보를 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법 제16조제3항, 이 영 제2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제4항·제6항(제18조제3항·제4항·제6항은 제18조의2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의3제6항·제7항(제18조의3제6항·제7항은 제18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 ----- 사무 ③ 법 제14조의5에 따라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를 하거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자 통보를 하는 공무원은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국적과	
연 락 처	(02) 2110 - 4123